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4. 25(목) 10:00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 정 재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514호

나. 제 출 자 : 고영찬 의원

다. 제출일자 : 2024. 4. 15.

라. 회부일자 : 2024. 4. 15.

2. 제안이유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기관·단체의 상호협력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금천구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중 “구로소방서장”을 “금천소방서장”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제3항)

나.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중 성별 균형 비율 기준 추가(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의2 신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안 제7조제1항)

마.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8조제4호 신설)

바. 수당 지급 대상 협의회 위원에 대한 범위 한정(안 제11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바뀐 기관명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비율 기준 규정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현황 1부. 끝.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붙임 2 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현황

연번	자치구	구성연도	조례	기능	구성	수당
0	서울특별시	2014	유 (' 14.3.20.)	협의	20명 이상 30명 이내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
1	**금천구**	**2017**	**유 (' 17.1.4.)**	**협의**	**20명 이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 또는 실비**
2	종로구	2008	유 (' 19.11.8.)	협의	15명 이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3	중구	2016	유 (' 16.9.26.)	협의	20명 이내	출석한 위원 수당 또는 실비 지급
4	용산구	2008	유 (' 20.12.31 .)	협의	20명 이내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
5	성동구	2008	유 (' 17.11.23 .)	협의	20명 이내	행정적인 지원과 경비 지원
6	광진구	2017	유 (' 17.9.22.)	협의	20명 이내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지급, 공무원 제외
7	동대문구	2008	유 (' 17.6.22.)	협의	20명 이내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또는 실비 지급
8	중랑구	2011	유 (' 10.12.31 .)	협의	20명 이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기관, 단체, 시설에 지원
9	성북구	2019	유 (' 18.12.27 .)	협의	20명 이상 30명 이하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10	강북구	2021	유 (' 20.9.18.)	협의	20명 이상 30명 이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지급
11	도봉구	2008	유 (' 16.9.13.)	자문	15명 이내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
12	노원구	2008	유 (' 13.7.5.)	심의 (위원 제철, 기피, 회피 규정O)	20명 이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경비 지급
13	은평구	2016	유 (' 16.7.28.)	협의	15명 이내	행정적 · 재정적인 지원

연번	자치구	구성연도	조례	기능	구성	수당
14	서대문구	2015	유 (’14.9.17.)	협의	15명 이내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
15	마포구	2012	유 (’12.6.7.)	협의	20명 이내	행정적인 지원과 경비 지원
16	양천구	2008	유 (’20.10.29.)	심의 (위원 제철, 기피, 회피 규정X)	20명 이내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 제외
17	강서구	2018	유 (’20.5.19.)	협의	20명 이내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18	구로구	2008	유 (’20.3.12.)	협의	25명 이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19	영등포구	2010	유 (’10.12.30.)	협의	20명 이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20	동작구	2017	유 (’17.9.28.)	협의	25명 이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또는 실비 지급
21	관악구	2013	유 (’11.10.13.)	협의	25명 이내	행정적지원과 최소한의 비용
22	서초구	2019	유 (’20.10.23.)	협의	20명 이내	출석한 위원 수당 또는 실비 지급
23	강남구	2017	유 (’16.12.23.)	협의	20명이상 30명 이하	공무원 및 관내 유관 기관 · 단체의 장이 아닌 위원 수당과 여비
24	송파구	2022	유 (’20.6.4.)	협의	25명 이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
25	강동구	2018	유 (’18.5.9.)	협의	20명 이내	행정적인 지원과 경비 지원